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

2023. 2. 28

금융위원회

목 차

Ⅰ. 추진배경

□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는 **보이스피싱 엄단**을 **국정과제**로 발표하고 **대응***

*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, 범부처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시행('22.9)

□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'21년 대비 '22년에 큰 폭 감소 (전년 대비 발생건수 29.5%, 피해금액 29.8% 감소)

○ '22.9월에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이 **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**되면 **보이스피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**

발생건수(만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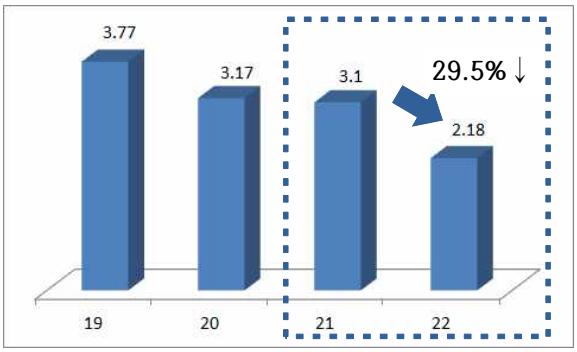

피해금액(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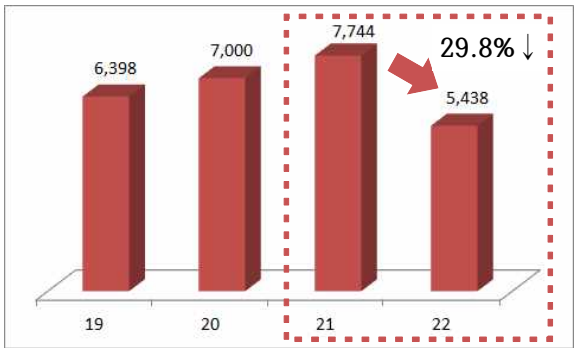

□ 기존 금융회사를 통한 **보이스피싱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남**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

①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**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**이 증가

* ('19년) 3,244건 → ('20년) 15,111건 → ('21년) 22,752건 → ('22년) 14,053건

②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**가상자산거래소,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확대**

③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**상대방의 계좌가 지급정지**된다는 점을 악용한 **통장협박**

□ **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**

○ **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**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**통신사기 피해환급법**(이하 "보이스피싱법") **개정 추진**(정무위 전체회의 통과)

○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, 경찰, 금감원, 은행연,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**TF를 구성해 대책 마련**

Ⅱ.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

1. 현황

□ 최근 **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**

<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현황 >

	'20년	'21년	'22년
건수	305	599	414
금액(억원)	82.6	163.6	199.6

□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*되면서 **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**

* ATM을 통한 출금 시 일일 출금한도 제한, 지연출금 등

2.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

1)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식

□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인은 **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**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

① **(유형1)** 범인은 **본인이 점유한 금융회사 계좌**로 피해금을 받고 이를 **가상자산거래소로 보내 가상자산을 구매**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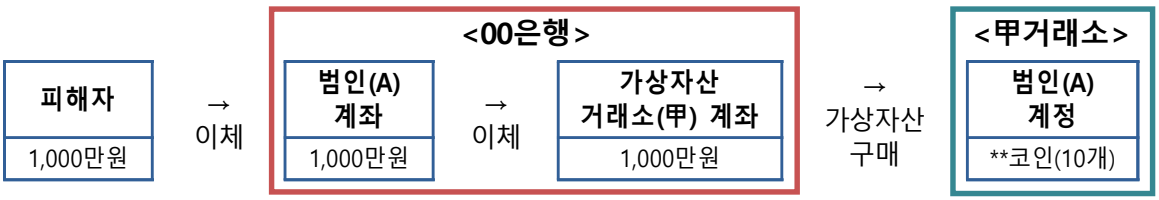

② **(유형2)** 범인은 **수수료를 주겠다며** 가상자산 구매대행자를 구하고 구매대행자는 피해자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범인에게 전송

□ 금융회사는 **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(甲) 계좌**로 간 경우 **가상자산거래소(甲) 계좌**에 대해 **지급정지**

○ 피해금이 그대로 가상자산거래소(甲) 계좌에 남아있다면 금융회사는 **피해금 환급절차**를 거쳐 **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**

* 피해구제 절차 : (피해자) 피해구제 신청 → (금융회사) 범인 계좌 지급정지 → (금감원) 범인 계좌 채권 소멸 → (금융회사) 피해금 환급

□ 범인 또는 구매대행자가 가상자산거래소(甲)를 통해 이미 **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**에는 **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**

○ **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**된 경우 가상자산은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**가상자산거래소의 계정에서 관리**

○ 보이스피싱법상 금융회사 계좌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며, **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**된 경우 **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 불가**

○ 따라서 범인 또는 구매대행자가 이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**범인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음**

< 보이스피싱 유형 1의 경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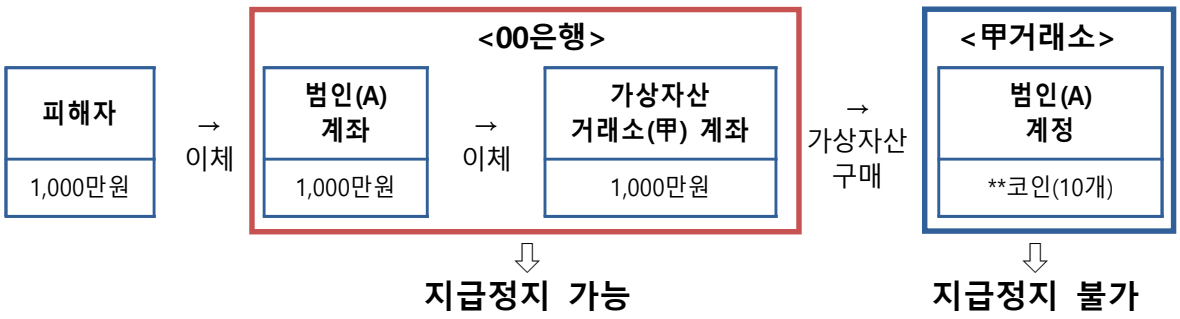

< 보이스피싱 유형 2의 경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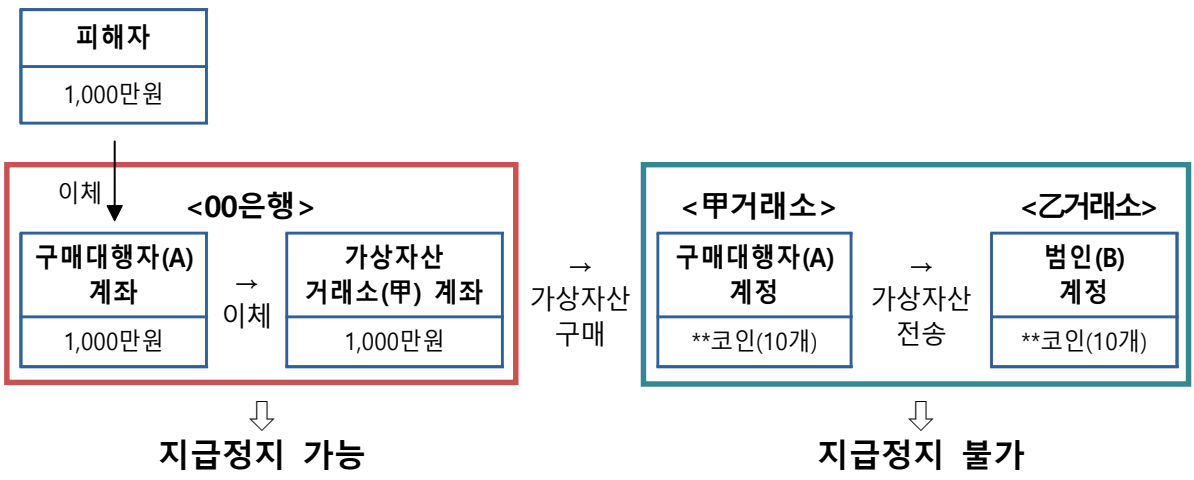

2)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직접 전송 방식

□ (가상자산 직접 전송) 피해자는 **본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**(전자지갑)에서 **직접 가상자산을 구매**해 **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**

○ 피해자는 **범인이 이용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**해야 하는데 **현행 보이스피싱법상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없음**

○ 또한 피해자는 **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범인의 전자지갑을 관리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알 수 없는 문제**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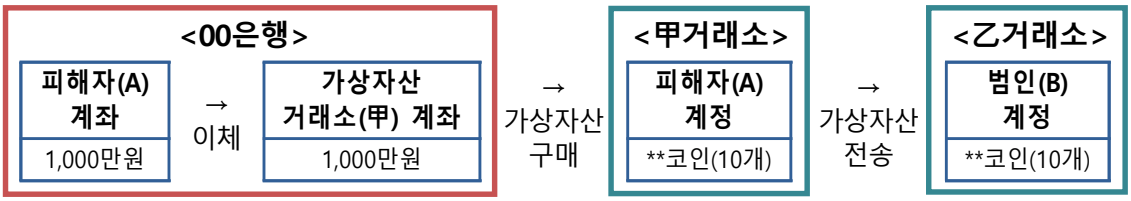

3. 문제점

1)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식

□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**가상자산거래소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범인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가 되지 않지만**

○ 다만,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음

* 계정 정지가 되면 계정 명의인의 입금, 출금, 가상자산 전송 등이 제한

□ 다만,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

○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번호만 주기 때문에 **가상자산거래소는 계좌번호로 피해자를 알 수 없음**

○ 계정 명의인이 **피해자를 직접 찾아서 합의** 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정 **명의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**에서 **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**

<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자 피해금 미반환 현황 >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
건수	84	289	219
금액(억원)	6.0	33.1	35.6

2)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직접 전송 방식

□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피해자는 **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**해야 함

○ 피해자는 **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동 전자지갑이 어떤 거래소에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려워** 계정 정지 요청에 어려움

*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한 건수 :
('20.上) 2 → ('20.下) 9 → ('21.上) 27 → ('21.下) 139 → ('22.上) 238 → ('22.下) 140

○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**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**해야 하지만, **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**

3)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피해구제 불가

□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**가상자산 전송이 한 번이라도 발생**하면 **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움**

○ 보이스피싱법상 피해금이 금융회사(甲)에서 다른 금융회사(乙)로 갈 경우 **금융회사간 정보공유**를 통해 **피해금 지급정지 가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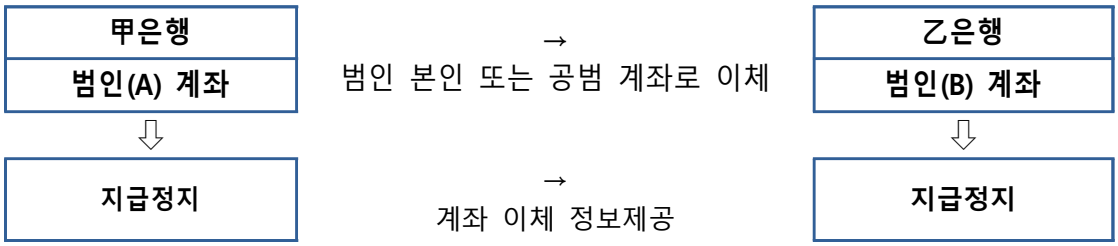

○ **전자지갑**은 **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**로, 가상자산거래소(甲)는 피해금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(乙)로 간 경우 **관련 정보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알려줄 수 없음**

* **개인 전자지갑도 개인정보**에 해당되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계정 명의인의 동의없이 가상자산거래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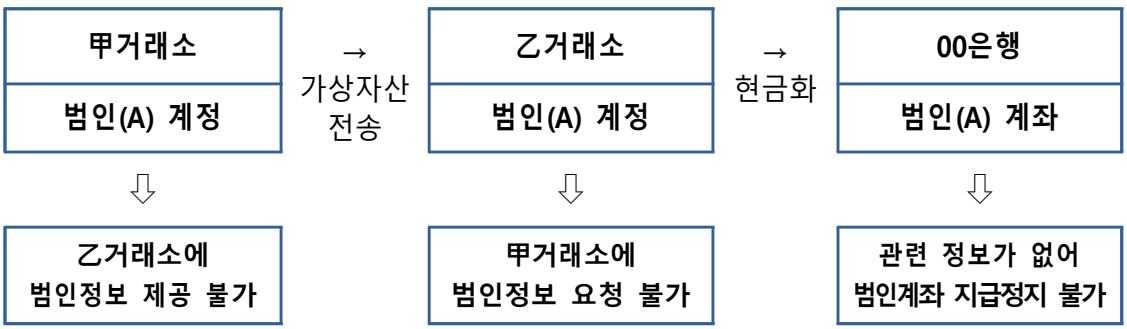

4. 대응방안 :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법 적용

□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**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**

○ **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**된 경우 **가상자산거래소**는 즉시 **범인의 계정을 정지**하고 **피해자 구제절차 진행**

< 새로운 제도 도입 전후 비교 >

		금융회사	가상자산거래소	
			현행	변경
피해구제	지급정지	○	계정정지 ×	계정정지 ○
	이의제기	○	×	○
	채권소멸절차	○	×	○
	피해금 환급	○	×	○
연관계좌정지		○	연관계정정지 ×	연관계정정지 ○

□ '23년 4월 중 **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**

5. 가상자산 현금화 대응방안

1) 현황

□ 범인이 **가상자산으로 보유한 피해금을 현금화**하는 방법은 세 가지

① 국내거래소에서 **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**

② 국내거래소에서 **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** 해외에서 현금화

③ 국내거래소에서 **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** 현금화

<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흐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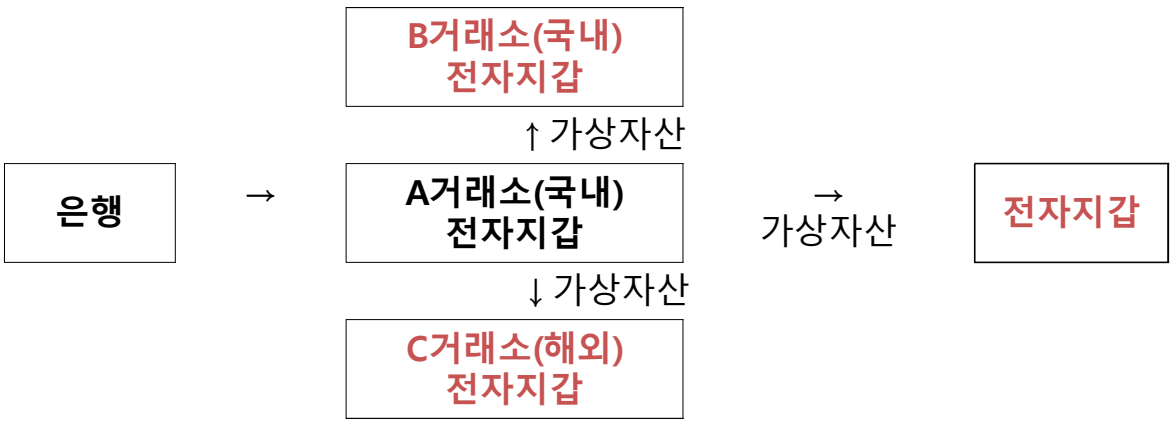

2) 현행 대응체계

1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거래소 이외의 **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**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 도입

<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숙려기간 >

	업비트	빗썸	코인원	고팍스	코빗
최초 원화입금	72시간	24시간	24시간	72시간	등급별 지연출금 및 FDS를 통한 통제
추가 원화입금	24시간	24시간	24시간	24시간	

2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을 **해외거래소 또는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**으로 전송할 경우 **일정한 제한**을 둠

○ **해외거래소 전송 시** 국내거래소는 **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 한해 본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만 송부**할 수 있도록 함

○ **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**으로 출금할 때도 **본인이 직접 생성한 전자지갑에 한해 출금**을 가능토록 함

3) 문제점

□ **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**할 경우, **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**이 가능하나,

○ 가상자산이 **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출금**된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 **피해금 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**

* 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협조 요청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국가 수사기관 공문을 요구

②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의 경우 key를 개인이 관리하므로 계정 정지가 어려움

<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'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이전 현황 >

구분	'22년 상반기		
	건수	금액	비중
전체 거래	5,205,100	57조 2,507억원	100%
국내거래소	265,189	9조 4,347억원	16.5%
해외거래소	555,438	16조 1556억원	28.2%
개인 전자지갑	92,659	1조 4,241억원	2.5%

* '22.3월말 트레블룰 이후 금액만 집계

□ 또한, 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**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만 범인이 이를 회피**할 수 있음

○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**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지갑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발생**

* 협약을 맺지 않은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 이를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 사진과 합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인증받는 방식

○ 개인이 만든 전자지갑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**본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인지 여부를 확인**하고 있지만 **이를 회피**할 여지

* 전화인증 등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명의의 대포폰 사용 시 회피 가능

4) 대응방안

1 (**본인확인**)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**본인확인 강화**

○ 금융보안원이 **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**('23.7월)하고 **필요한 제도 개선**('23.하반기)

* (예시) 협약을 맺지 않은 해외거래소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인지 여부 점검
전자지갑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전자지갑이 본인 것인지 여부 점검

2 (**숙려기간**)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,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동일한 **숙려기간 도입 → 일정기간 피해금 보존**

*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,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

○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므로 **'24년부터 시행**

☞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**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**할 것으로 기대

☞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, **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보호가 강화**

Ⅲ.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

1. 현황

□ 최근 **상대방 계정, ID, 전화번호 입력** 만으로 **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**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크게 증가

* '22.9월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(75개사) 중 **30개사**가 **간편송금 서비스 제공 중**
** 간편송금액(억원) : ('18) 1,045 → ('19) 2,346 → ('20) 3,566 → ('21) 5,045

□ 간편송금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**보이스피싱도 증가**

<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>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.6월
피해금액(억원)	0.78	1.14	14.7	25.5	42.1
피해자수(명)	34	53	349	1,203	2,095

2. 유형 및 문제점

□ [사례1]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**00페이(선불업자)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**

○ 피해자는 범인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**선불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야만**※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어 확인에 **2~3일 소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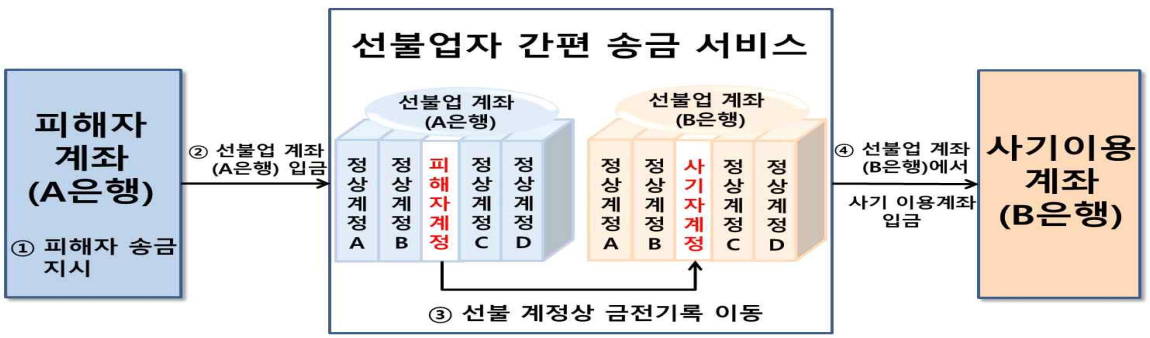

※ 피해자가 '직접' '송금확인증'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이유

① 피해자는 **해당 선불업체를 이용한 당사자**이므로 **직접 교부 요청**해야함 (**A은행**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금확인증 등 **정보제공 불가**)

② 금융회사 지급결제시스템상 **피해금 이전을 확인할 수 없어***, 선불업자가 **자금이전 내역을 확인**하는 **추가 절차(송금확인증) 필요**

* **(송금(A)은행)**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한 사실만 확인가능,
(수취(B)은행) 간편송금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만 확인 가능

□ [사례2]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 송금 후, **해당 사기이용계좌에서 00페이(선불업자)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**

○ 피해자는 피해금이 어떻게 범인에게 갔는지 알 수 없고, 금융회사도 **선불업자에게 송금확인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**

* **피해자**는 해당 선불업체 이용 당사자가 아니므로 **송금확인증을 제출할 수 없고**, 선불업자가 발급하는 **송금확인증**에는 수취인 계좌번호 등 **금융거래정보가 포함**되어 있어 **금융실명법(§4)** 등에 따라 **정보제공이 제한**됨

○ 금융회사는 **통상 1~2개월 후에야 피해금이 어떤 계좌로 갔는지 알 수 있어** 피해자 구제가 미흡

* **A은행**은 선불업체의 **이의제기(통상 1~2개월 뒤에 피해신고를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)에 따른** 서류제출 時 **송금확인증 확인**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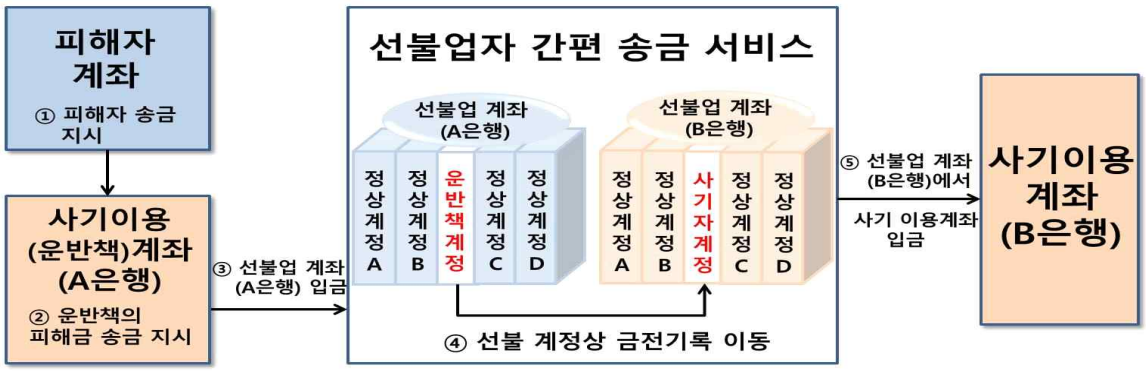

3. 대응방안

□ **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** 관련 계좌정보 등을 **공유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

○ **보이스피싱 신고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**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**신속한 지급정지 가능**

○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등을 통해 **파악되는 이상거래*** 등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 간 **정보공유**로 **피해확대 방지 가능**

* 예) 특정 은행 계좌에서 특정 선불계정으로 실시간 반복이체 되는 경우

□ **'23년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**

☞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통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어 **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**이 될 것으로 기대

Ⅳ.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 대응

1. 통장협박 유형 및 현황

□ 범인은 **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** 임의로 **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**

○ 이 경우 금융회사는 **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**하게 되며, 범인은 **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**

□ 범인은 주로 **타인명의 계좌로 접속**해 타인명의 계좌에서 **통장협박대상자들에게 소액**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

○ 범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통장협박을 하는 경우 검거될 수 있으므로 **주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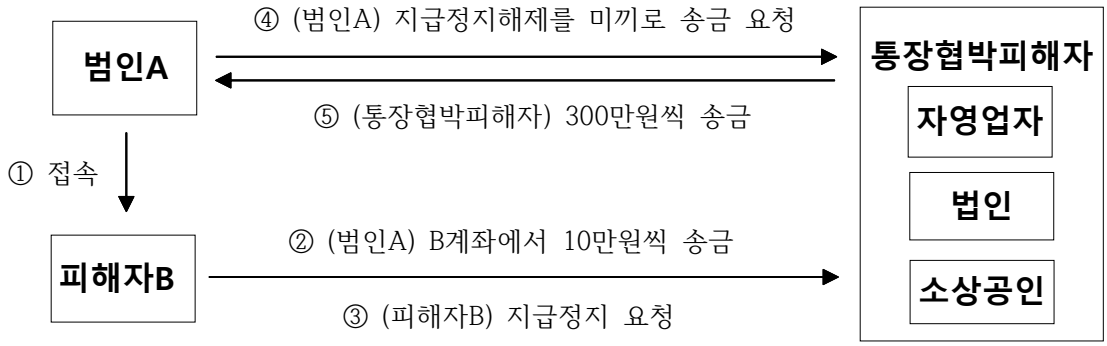

□ 통장협박의 경우 명의인의 **이의제기가 금융회사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** 통장협박과 관련된 **통계는 없으나**

○ 금융회사들은 **지급정지 요청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**이므로 **통장협박도 비례해서 증가**하는 것으로 추정

【시중은행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현황】

	'20년	'21년	'22년 1~3분기	합계
① 지급정지 요청건수	33,730	45,321	41,414	120,465
② 피해구제 미신청건수	9,312	14,805	15,416	39,533
③ 명의인 이의제기 건수	2,624	6,766	6,152	15,542
④ 채권소멸: ①-(②+③)	21,794	23,750	19,846	65,390

* 통장협박의 경우 주로 ④번의 채권소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례에 포함

2. 문제점

1 범인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므로, 통장협박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**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음**

○ 통장협박대상자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**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지급정지 해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큰 지장**

2 보이스피싱법은 통장협박피해자가 금융회사에 **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**

○ 통장협박피해자는 **지급정지를 해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**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**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**

* 지급정지 신청 → 채권소멸 → 피해금환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

3 통장협박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**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부**할 경우 **지급정지 해결방법이 없음**

○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**통장협박피해자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**이 있어 **통장협박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꺼림**

3. 대응방안

□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(통장협박피해자 계좌)가 **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**할 경우 **일부지급정지** 허용

* 금융회사는 명의인 정보, 거래내역,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다만, 계좌잔액 중 **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**(일부지급정지)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

*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 후 입출금,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도록 함

□ **'23년 4월** 중 **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**

☞ 자영업자, 서민 등이 **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**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

☞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**통장협박 사기가 감소**할 것으로 기대

Ⅴ.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

1. 배경 및 문제점

□ 은행권은 **고객계좌 모니터링**을 통해 **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계좌 지급정지** 등 임시조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,

○ 일부 은행에서 **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**되었음에도 **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**된 사례가 발생

· 81세 A씨 계좌에서 **야간 및 심야시간대**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**15개 계좌**로 **총 69회**에 걸쳐 **약 2억원의 자금이 이체됐고,** 해당 은행은 **피해의심거래로 탐지**하였으나, **업무외시간**이라 임시조치(지급정지)를 취하지 못함

□ 업무시간 외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 **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**

① (**정규시간에만 운영**) 주로 **지방은행·인터넷은행** 등 **중소형은행**은 모니터링 직원이 **오전 9시 ~ 오후 6시**까지 **정규시간** 근무

② (**근무시간 연장**) **대형은행**은 **연장근무** 또는 **탄력근무**를 통해 모니터링 직원의 **임시조치 시간**을 **오후 7시 ~ 익일 2시까지 연장**

③ (**자동 임시조치**) 일부 은행은 **모니터링 직원 퇴근 후**에도 FDS를 통한 **자동 임시조치**를 실시*하여 **24시간 운영**

* FDS에 보이스피싱 피해의심거래 요건을 설정하여 요건 해당시 지급정지

2. 대응방안

□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**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**를 시행할 수 있도록 **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**

○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**주중 9시~20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** (최소기준이며, 은행별로 더 강한 기준 시행 가능)

*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90.1%는 9시~20시 사이 발생('20.1~'22.9월까지 기준)

○ **주중 20시 이후, 주말·공휴일에는**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**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** (시스템 개선 후 **'24년부터 시행**)

☞ 보이스피싱 탐지 시 24시간 대응이 가능해 **피해사례 감소 기대**

Ⅵ. 향후 계획

1 **법 개정**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후 **의원입법**을 **추진**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

2 가상자산거래소 **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추진**

< 세부 추진계획 >

과제내용	추진계획	관계기관
1.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		
1 피해구제절차 적용	▸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 발의 협의 ('23.4월)	금융위원회
2 본인확인 강화		
❶ 금융보안원 점검	▸ '23.7월까지 취약점 점검 완료	금융보안원
❷ 보완조치	▸ '23년 하반기 취약점 보완	가상자산거래소
3 숙려기간 적용	▸ '24년부터 시행	가상자산거래소
2.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		
□ 금융회사-선불업 자간 정보공유	▸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 발의 협의 ('23.4월)	금융위원회
3.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 대응		
□ 일부지급정지 근거 마련	▸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 발의 협의 ('23.4월)	금융위원회
4.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		
□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	▸ '24년부터 시행	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

참고1 제1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주요내용

과제명	주요내용	조치사항	완료시한
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적용	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	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	'22.10월
보이스피싱 처벌 강화	① 보이스피싱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~ 5배 상당 벌금 부과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	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	'22.10월
1원 송금 방식의 실명확인 절차 보완	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이내로 단축 ② '계좌개설용' 문구 표기	제도 시행	'22.12월
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	①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②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제한	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	① '22.12월 ② '23.上
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	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: 1회 100만원 →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 입금 수취한도 설정 : 1일 300만원	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	'23.上
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	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(1일 한도 : 1천만원 → 300만원)	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	'23.上
원격제어 방지	원격조종 앱 차단	시스템 개발 및 점검	'23.上
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	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	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	① '23.上 ② '23.下
여전사 본인확인 강화	여신전문사도 카드발급·대출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	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	'23.下

※ ☐ : 시행완료과제

참고2 현행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

1. 피해예방

1 (**지연인출·이체**) 100만원(1회) 이상 입금(송금·이체 등)된 통장에서 **자동화기기**를 통한 출금·이체 발생 시, **30분간 거래**를 **지연**

2 (**지연이체서비스**) 수취인 계좌에 **일정시간**(최소 3시간) **경과** 후 입금되며, 입금 **30분**前 **취소 가능**(창구거래 未적용)

※ 건별한도(최대100만원)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이용가능

3 (**입금계좌지정서비스**)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**소액송금**(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)만 **가능**(창구거래 未적용)

4 (**해외IP차단서비스**) 국내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**이체거래 차단**

5 (**은행전화번호진위확인서비스**) **은행**에서 고객대상으로 **전화·문자** 발송시 사용하는 **전화번호**를 **조회**

2. 피해 확산방지 및 구제

1 (**임시조치**) 금융회사 자체점검결과 **피해의심거래계좌**에 대해 **이체·송금**을 **지연 또는 일시 정지**

2 (**지급정지**) **보이스피싱 피해금**이 송금·이체된 **사기이용계좌**의 전부에 대해 **지급**을 **정지**

3 (**전자금융거래제한**) **지급정지**가 이루어진 **계좌명의인**의 모든 **전자금융거래**를 **제한**

4 (**채권소멸·피해금환급**) **예금채권**을 **소멸**시켜 **피해자**에게 **환급**

5 (**전화번호이용중지**)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**전화번호 이용중지**

6 (**금융회사에 대한 조치**) 금융위는 **금융회사 또는 임직원**에 대하여 **권고·요구·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** 가능

※ ❶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경고·견책 또는 감봉, ❷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인력·전산시설·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